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6일, 박용갑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용갑의원)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택배·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66조제4항)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전기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로 정하고 있고, 수소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0만대, 2030년 85만대로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기차는 약 65만대이고, 수소차는 약 4만대임.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인 113만대와 20만대를 2024년 9월 기준으로 달성하지는 못함.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및 2030년 목표로 설정한 대수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및 수소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공고한 대수는 전기자동차 134,490대(전기승용차 95,592대, 전기화물차 37,000대, 전기승합차 1,898대)와 수소자동차 6,849대임. 전기자동차 대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만원에서 1,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경우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년간 총 8,045억원(연평균 4,0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개정안 제66조의3 신설)

개정안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경유 외의 자동차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만원 면제 또는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본인의 명의로 새로운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 바 있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17년 외에도 2009년에도 시행하여 지방세 3,601억원을 감면함.

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5등급의 경유자동차 등의 폐차시 기본보조금(50~100%)과 차량구매시 추가보조금(30~200%)으로 지급하여 차량잔존가치 지원잔존가격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등급별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는 2024년 9월 기준 5등급은 약 22만대, 4등급은 85만대 수준임.

개정안을 통해 노후 경유차(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제7호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용갑의원안에 따라 노후경유화물차를 폐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차 구입 및 신규등록시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5년 17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